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552
----------	-----

제출연월일 : 2023년 2월 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과 「도서관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인용조문 현행화
- 나. 「도서관법」 전부개정('22.12.8.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인용조문 현행화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별첨 6]
 - 「지방자치법」 및 「도서관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1])
- 다. 협 의: 감사관, 민주생활시민교육과 협의완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미실시 [별첨 2]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 2) 교육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3]

-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4]
- 5)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5]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과 「도서관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139조”를 “「도서관법」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156조”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30조”를 “「도서관법」 제34조”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도서관법」 제27조” 를 “「도서관법」 제29조” 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 를 “「지방자치법」 제161조”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비용추계서 첨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우리교육청 조례 내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내용으로, 별도의 재정지출 증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한동희 (02-3999-184)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해당 없음(미실시)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9조 관련)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장학사	천주영
입안주무부서	행정관리담당관	통보일	2023. 1. 5.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안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도서관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의 개선과 이를 통한 시민의 권익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함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 수정 등 단순변경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시행규칙의 정비를 통한 법령 적합성 확보가 목적이므로,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안동의”

【별첨 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3A서울교육002			
정책명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명	한동희	전화번호	02-399-9184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박정원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3년 01월 02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3년 01월 10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2023년 01월 12일</p>				

【별첨 5】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2023. 1. 10.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한동희
평가담당	학생인권옹호관	김영준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	<p>- 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하여 학생인권 영향평가 결과 권고의견이 없음.</p>					<p>원안동의 (권고의견 없음)</p>

【별첨 6】

관련법규

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④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⑤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⑧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

	<p>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	---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p>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p>	<p>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p>
<p>[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p>	<p>[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p>
<p>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p> <p>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p> <p>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⑥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p>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p>	<p>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p>
<p>[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p>	<p>[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p>
<p>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p>	<p>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	--

⑦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p>	<p>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p>
<p>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p>	<p>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p>	<p>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p>
<p>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p>	<p>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p>

② 「도서관법」 전부개정

⑩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p>도서관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63호, 2022. 1. 18., 일부개정]</p> <p>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p> <p>③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20. 12. 22.></p> <p>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p>	<p>도서관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p> <p>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p>
⑪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p>도서관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63호, 2022. 1. 18., 일부개정]</p> <p>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3. 25.></p>	<p>도서관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p> <p>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⑫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p> <p>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p>	<p>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p> <p>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